

태권도박물관(공원)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견

검 토 보 고

이 안건은 2003년 11월 1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1. 제안이유

- 문화관광부의 태권도박물관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통일동산 내에 건립을 목적으로,
- 태권도박물관 건립주체인 경기관광공사에 경기도지사 명의로 현물 출자하는 조건으로 경기도로부터 140억원의 부지매입 보조금을 2001. 12월에 교부받아
- 2002. 1월 토지소유권자인 한국토지공사와 3단계사업 준공예정일인 2003. 12월 이후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소유권 등기이전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이나,
- 문화관광부의 태권도박물관 부지선정유보 등 사정변경으로 본 사업의 가시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전망되어 “영어마을조성부지”로 활용하기로 확정됨에 따라

- “태권도박물관(공원)건립 사업추진 협약”을 동 협약서 제6조제 4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고, 경기도의 역점추진사업인 영어마을 조성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“태권도박물관(공원)건립사업 추진협약”을 동 협약서 제6조제4 호의 규정에 의거 합의 해지
- 도비보조금으로 취득예정인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태권도박물관건립 부지를 파주영어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로 권리를 양도
 - 탄현면 법흥리 7002번지(대) : 99,944.0m²(관광휴양 및 연수시설)
 - 탄현면 법흥리 7003번지(대) : 148,532.3m²(관광휴양 및 연수시설)
 - 탄현면 법흥리 9999-94번지(잡) : 32,000.0m²(폐기물 처리시설)
 - ※ 총 3필지 280,476.3m²

3. 태권도박물관(공원) 건립사업 추진현황

□ 토지현황

- 위 치 :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7002번지 일원
- 면 적 : 280,476.3m²(약 85,000평)

□ 추진과정

- 2001. 12. 26 : 태권도박물관 건립사업 추진협약서 체결
(경기도⇔파주시)
- 2001. 12. 27 : 부지매입자금(140억원) 도비보조금 교부
(경기도⇔파주시)
- 2002. 1. 31 : 용지매매계약서 체결(파주시⇔한국토지공사)
- 2002. 2. 5 : 부지매입비 지급(파주시⇔한국토지공사)
- 2002. 10. 7 : 태권도박물관건립사업 추진 백지화 검토(경기도)
- 2003. 8. 25 : 경기도 영어마을 조성부지로 선정(영어문화원)
- 2003. 8. 30 : 경기도 영어마을 발전방향 및 타당성·기본구상
용역(경기도)
- 2003. 10. 25 : 경기도 영어마을 기본계획 수립용역(경기도)

□ 협약해지 합의사항

- 근 거 : “태권도박물관(공원)건립사업추진협약서” 제6조제4호
- 합의사항
 - 태권도박물관 건립부지를 파주영어마을 조성사업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로 권리양도
 - 7002번지(대) : 99,944.0m²(관광휴양 및 연수시설)
 - 7003번지(대) : 148,532.3m²(관광휴양 및 연수시설)
 - 9999-94번지(잡) : 32,000.0m²(폐기물 처리시설)
 - 권리양도에 필요한 제반사항 협력

4. 검토의견

- 태권도박물관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견은 파주시 탄현면 범흥리 통일동산내에 태권도박물관을 건립하고자 경기도로부터 140억원의 부지매입 보조금을 교부받아 한국토지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등기이전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문화관광부의 태권도박물관 부지선정유보 등 사정 변경으로 본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전망되어 동 부지를 영어마을 조성부지로 활용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경기도와 파주시간의 「태권도박물관건립사업추진협약」을 협약서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고 경기도의 역점추진사업인 영어마을 조성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.

- 동 태권도박물관건립부지인 탄현면 범흥리 7002번지의 총 3필지 280,476평방미터의 토지는 경기도로부터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아 파주시에서 매입한 토지이기는 하나 매입한 토지가 현재까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해 지적공부가 미 정리된 상태로 소유권이전청구권만을 갖고 있는 상황임.

동 재산은 소유권이전청구권만을 갖는 채권성격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파주시의 재산으로 볼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처분절차는 요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.

- 아울러 동 부지는 지방의회로부터 태권도박물관건립사업추진 협약해지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파주시에서 경기도로 양도·양수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게 됨.

- 태권도박물관건립사업추진협약서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파주시는 도에서 자본보조한 140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한 후 태권도박물관 건립주체인 경기개발공사에 경기도지사 명의로 현물출자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된바 있고 지난 2001. 12. 26일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바 있어 동 부지의 경기도 반환을 위한 협약해지가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됨.
- 태권도박물관건립사업추진협약서 제6조제4항의 의한 협약해지 약정과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 도비보조금이 지원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했을 경우 반납토록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토지를 매입한 상태에서는 대물반환도 가능함으로 태권도박물관건립부지를 경기도에 반환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여짐.
- 파주시가 태권도박물관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에 동의할 경우 부지 소유이전등기청구권이 경기도로 변경되게 되며 경기도에서는 동 부지에 약 109,66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영어교육연수시설, 문화·스포츠시설, 시츄에이션 타운 등 외국에 나가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외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영어마을을 조성할 계획임.
- 이 지역에 영어마을이 조성되면 파주시민들이 교육, 체험, 놀이가 조합된 영어마을을 이용하기 용이하고 영어교육에 소요되는 과중한 사교육비의 절감과 시민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화시대에 맞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문화, 예술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부가적 수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기대됨.

- 그러나 파주시가 당초 계획했던 목적과 의도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중점시책인 영어마을 추진사업을 위해 협약 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신축하는 영어마을 시설을 파주시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쿼터의 확보는 물론 편의제공을 포함한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강력한 요구는 물론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